

建築法規 問題 解説 (4)

建設部

韓 奎 峰

지난 5月号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建築法 質疑応答」은 6회에 이르는 동안 70種의 質疑에 대한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釈과 解説을 게재하였다.

「建築士誌」를 통하여 “質疑에 대한 有權解釋”의 내용을 소개한 때문인지 近來에 와서는 質疑의 件数가 많이 줄어 들었고 従前에 소개한 것과 그 내용이 같거나 類似한 것들이므로 每号에 계재할 만한 분량이 안되는 것을 꼭이나 多幸하게 생각하며 이번달 부터는一般的인 問題解説과 같이 質疑応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난 11월호에 「道路와 通路」라는 題目으로 住銀 韓 鼎燮 技術部長님이 쓴 글은 建築法에 대한 建築人相互間의 協助와 意見 교환으로서 有益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機会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3) 避難施設 로서의 階段

避難階段' 特別避難階段 및 直通階段은前述한 바와 같아 避難施設로서의 重要性에 따라 設置하게 하는 것임으로.

- 特殊建築物 中 火葬場 · 屠殺場 · 진애 및 오물처리장과
- 一般建築物(特殊建築物이 아닌 것)中 2層以下の 建築物과 延面積 1,000M² 未満의 建築物은 適用 대상에서 除外된다.

① 直通階段

避難層이 아닌 層에 設置하여야 할 直通階段은 対象建築物 어느 것이거나 1個所 以上이어야 하며 建築物의 用途와 主要構造部의 마감 材料에 따라 居室로부터 1個의 直通 階段까지의 步行 距離가 (表 17-4)의 基準以下가 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建物의 規模와 階段의 位置等으로 直通階段의 数를 決定하는 規定과 (表 17-4)

에 適合하드라도 2個 以上의 直通階段를 設置하여야 하는 規定이 있다.

表17-4

構造 居室의 種類	主要構造부가 耐火構造 또는 不燃材料인 경우	其他의 경우
百貨店의 賣場	30(M)	30(M)
病院·호텔·旅館·共同住宅 ·寄宿舍其他 이와 類似한用途에 쓰이는 建築物의 該當用途에 쓰이는 居室	50	30
上記 居室 以外의 居室	50	40
(註) 다만, 主要構造부가 耐火構造 또는 不燃材料로 된 4層 以下の 建築物로서 居室 및 居室로 부터 地上에 通하는 主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壁 및 반자의 마감을 不燃 또는 準不燃 材料로 하는 경우에는 위 数值(距離)에 10M를 加算 함.		

② 2個以上의 直通階段 設置

(表 17-4)의 規定에 適合하게 계단의 数가 決定되어야 함은勿論이지만 (表 17-4) 規定에서 하나의 直通階段으로 充分하다 하드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個以上을 設置하여야 한다.

- (가) 劇場·映画館·演芸場·觀覽場·公会堂·集会場·百貨店 其他 이와 類似한用途의 建築物
- (나) 병원 및 진료소 用途의 層으로서 그층의 병실 바닥面積이 50m^2 以上인 것.
- (다) 호텔·여관·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類似한用途의 層으로서 該當用途로 쓰이는 居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m^2 以上인 것.
- (라) 위 (가) (나) (다)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層으로서 그 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m^2 (피난층의 直上層과 地下層에서는 200m^2) 以上인 것.
- (마) 위 (가) (나) (다)와 복합 용도가 아닌 建築物의 層으로서 그 層의 居室 바닥面積의 合計가 150m^2 (피난층의 直上層과 地下層에서는 200m^2) 以上인 것.

③ 避難階段과 特別避難階段

前述한 直通階段을 避難特別 또는避難階段의 構造로 하도록 하는 規定은 大別하여 百貨店 (類似한用途의 것을 包含)의 경우와 其他의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層數에 따라 規定을 달리 하고 있다.

(가) 百貨店의 경우

- 3層 以上的 層을 百貨店으로 使用할 때에는 각層의 販賣場과 屋上 広場으로 부터 2個 以上的 直通階段을 設置하고 3層과 4層일 때에는 피난계단 또는 特別피난

계단의 構造로 設置하여야 하며 5層 以上일 때에는 이中 1個以上을 반드시 特別避難階段의 構造로 하여야 한다.

이 때 “2個 以上的 直通階段의 数”에는前述한 規定(令 第104條 및 第105條)에 依하여 設置한 直通階段을 包含 한다.

• 5層 以上的 層을 百貨店으로 쓰는 바닥面積의 合計가 $3,000\text{m}^2$ 를 넘는 경우에는前述한 모든 規定에 依하여 設置한 直通階段外에 別途의 直通階段을 바닥面積 $3,000\text{m}^2$ 마다 1個의 比率로 設置하여 이를 特別피난계단의 構造로 하고 따라서 4層 以下의 層에는 通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規定에 依하여 設置하는 階段의 数는

△ 5層에서는 5層 以上 모든 層의 百貨店 바닥面積의 合計에 따라

△ 8層에서는 8층 以上 모든 層의 百貨店 바닥面積의 合計에 따라 그 層의 階段数가 決定될 것임으로 월層으로 올라갈수록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 百貨店의 避難用의 階段에 对하여 層과 바닥面積으로 規定한 것 以外에 階段의 幅을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로 因하여 階段의 数가 增加하는 경우도 있게된다.

피난 및 特別피난계단의 有効幅의 合計 基準

表17-5

位置(層)	百貨店의 用으로 쓰이는 바닥面積	階段有効幅의 合計
地上層	• 直上層 以上的 바닥面積의 合計 100m^2 에 对하여	• 6cm比率로 算定한 幅以上이고
	• 直上層 以上的 層中 바닥面積이 이 最大인 層의 100m^2 에 对하여	• 30cm比率로 算定한 幅以上
地下層	当該層의 바닥面積 100m^2 에 对하여	40cm比率로 算定한 幅以上
註		地上 1層 또는 2層에서 피난층 또는 地上에 通하는 階段의 幅은 実幅의 1.5倍에 상당하는 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屋上広張의 面積은 直上層의 바닥面積에 包含한다.

피난 및 特別피난계단에 통하는 出入口의 有効幅 (表17-6)

位置(層)	当該層의 바닥面積	出入口의 有効幅
地上層 및 屋上広場	100m^2 에 对하여	27cm比率로 算定한 幅以上
地下層	"	36cm比率로 算定한 幅以上

(나) 其他(百貨店 以外)의 경우

避難階段과 特別避難階段을 設置하여야 할 対象建築

物中 百貨店을 除外한 其他의 建築物은 層數에 따라 피난 및 特별 피난계단으 設置 規定을 달리하고 있으며,

5層에서 10層까지의 建築物과 11層 以上의 建築物로 区分 된다.

• 5層~10層의 建築物

5層 내지 10層 및 地下 2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地上에 通하는 直通階段과 5層 以上의 層으로부터 피난층 및 地上에 通하는 直通階段과 直通으로 設置된 地下 1層의 階段은 피난계단 또는 特별피난 계단의 構造로 하여야 한다.

〈例外規定〉 主要 構造部가 耐火構造인 建築物로서 5層以上의 層의 바닥 面積 合計가 100M²未滿이거나 100M²以上이더라도 100M²以内마다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 또는 甲種防火門(換氣用 窓으로서 그 面積이 2000M²以下인 鉄製網込 유리를 넣은 開口部가 있는 것을 包含으로 区劃되어 있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 11層 以上의 建築物

11層 以上 또는 地下 3層 以下의 層으로 부터의 直通 階段은 모두 特別避難階段의 構造로 하여야 한다.

(4) 階段의 構造

① 直通階段의 構造制限

屋外에 設置하는 直通階段은 木造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5層 以上의 層으로부터 設置하는 直通階段은 둘음 階段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屋内 避難階段의 構造

(가) 最上層 以外의 層에 있는 階段室은 (直接 外氣에 接하는 部分·屋内에 面하는 窓 및 甲種防火門을 除外한다 耐火構造인 壁으로 区劃

(나) 階段室에는 窓 其他の 채광상 有效한 開口部를 設置하거나 予備電源을 갖인 照明 機器

(다) 最上層 以外의 層에 있는 階段室에 屋内에 面하는 窓을 設置할 때에는 1個所의 面積이 1M² 以下인 鉄製網込 북받이 窓으로 設置

(라) 屋内로 부터 階段에 通하는 出入口는 甲種防火門으로 設置(最上層에서는 例外로 할 수 있음)

(마) 甲種防火門과 이의 셋門은 避難의 方向으로 열수 있게 設置

(바) 階段은 耐火構造로 하고 피난층까지 直通되게 設置.

③ 屋外避難階段의 構造

(가) 階段은 甲種防火門 및 鉄製網込유리 북받이 窓以外의 開口部로 부터 2M 以上의 距離에 設置(最上層에서는 例外로 할 수 있음)

(나) 屋内로 부터 階段으로 通하는 出入口는 甲種防火門으로 設置(最上層에서는 例外로 할 수 있음)

(다) 甲種防火門과 이의 셋門은 避難의 方向으로 열수 있게 設置.

(라) 階段의 有效幅은 90cm 以上으로 하고 耐火構造로 地上까지 直通되게 設置.

④ 特別避難階段의 構造

(가) 屋内와 階段室과는 直接 노내 또는 外氣에 向하여 열수 있는 窓을 設置하거나 施行 規則 第20條에서 定하는 排煙設備를 갖춘 2M² 以上의 附屬室을 通하여 連結.

(나) 階段室 및 附屬室은 다음의 部分을 除外하고는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으로 区劃.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으로 区劃할 必要가 없는 部分〉

• 直接 外氣에 接하는 部分

• 排煙設備部分

• 階段室의 노내 또는 附屬室에 面하는 部分에 設置하는 部分에 設置하는 북받이 窓

• 甲種防火門 및 乙種防火門의 部分

(다) 階段室에는 노내 또는 附強室에 面하는 북받이 窓 其他 採光上 有效한 開口部나 予備電源을 가진 照明設備을 設置

(라) 階段室에는 위 (다)의 規定에 依한 開口部 以外에는 屋内에 面하는 開口部의 設置 禁止

(마) 노내 및 附屬室에는 階段室 以外의 屋内에 面하는 壁에 開口部(出入口 除外)의 設置 禁止

(바) 屋内로 부터 노내 또는 附屬室에 通하는 셋入口에는 甲種放火門으로 노내 또는 乙種防火門으로 設置

(사) 甲種 및 乙種防火門과 이들에 設置하는 셋門은 避難의 方向으로 열수 있게 設置

(아) 階段은 耐火構造로 하고 避難層까지 直通 되게 設置

※ 最上層에서는 (가) (나) 및 (라)의 規定을 例外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階段室의 노내 또는 附屋室에 面하는 部分에 設置하는 窓을 북받이 窓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附屬室의 排煙設備 基準〉

(가) 附屬室의 바닥 및 壁 天井은 耐火構造 또는 不燃材料로 할 것.

(나) 附屬室에 設置하는 出入口는 甲種防火門으로 하고 피난의 方向으로 열수 있게 할 것.

(다) 排煙口 및 風道는 不燃材料로 하고 火災時 有效하게 排煙시킬 수 있는 規模로 하여 外氣 또는 專用의 굴뚝에 連結할 것.

(라) 排煙口에는 非常電源이 設備된 排煙機를 設置할 수 있게 할 것.

(바) 땜파를 設置할 때에는 排煙機의 作動에 依한 自動裝置로 하되 手動으로도 開閉할 수 있게 할 것.